

2006년도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시행공고

건축사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6년 3월 31일
건설교통부장관
대한건축사협회 회장

1. 응시자격	<p>가. 건축사예비시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축사법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1.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.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3.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초·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4. 건축에 관하여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<p>나.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축사법부칙 제2조(2급건축사에 관한 특례법 제3242호)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○ 건축사법시행령부칙 제2조(대통령령 제9878호)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
2. 시험과목	<p>가. 건축사예비시험 : 건축계획, 건축구조, 건축시공, 건축법규 (객관식 선택형)</p> <p>나.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: 건축계획, 건축구조 (객관식 선택형)</p>
3. 시험일자, 시험장소	<p>가. 시험일자 : 2006년 6월 25일(일)</p> <p>나. 시험시간 및 장소 : 2006년 6월 13일(화) 건설교통부 홈페이지,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·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</p>
4. 응시원서 접수	<p>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받습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 간 : 2006. 4. 17 ~ 4. 26 (시작일 09:00부터, 평일(토·일포함) 00:00~24:00, 마감일 18:00까지) 2. 방 법 :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(http://www.kira.or.kr)에 접속하여 접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“건축사시험응시원서접수”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. 3. 기 타 : 응시수수료(35,000원)외에 소정의 처리비용(인터넷결제이용수수료)이 소요됩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자는 대한건축사협회 본회 및 각 시·도건축사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.
5. 합격예정자 발표 및 제출서류	<p>가. 합격예정자 발표 : 2006년 7월 5일(수) 건설교통부 홈페이지,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·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</p> <p>나.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접수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접수기간 : 2006. 7. 11 ~ 7. 14 (평일 09:00~18:00) 2. 제출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응시표사본, 주민등록초본, 학력(재학)증명서 각 1부 - 경력증명서 1부 (해당자에 한하며, 경력제출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합격예정자 발표시 공고함) - 호적초본, 칼라사진2매, 2급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 (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합격예정자에 한함)
6. 응시자 주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의 경력인정기준일은 시험시행 전일(2006. 6.24)까지입니다. ○ 시험당일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(여타증명서)을 지참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 (단, 응시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사진 1매, 주민등록증(여타증명서)을 지참하고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함.) ○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(여타증명서),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, 시험 개시 후에는 시험장에 절대 입실할 수 없습니다. ○ 시험실 내에서는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를 소지할 수 없으며, 흡연·담화·물품의 대여를 일체 금지합니다. ○ 제출서류는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. ○ 응시원서의 기재 오기·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와 시험답안지의 기재착오·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, 시험답안지는 일체 열람·확인할 수 없습니다. ○ 부정행위자는 건축사법 제15조의2에 의거 시험을 무효로 하며,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 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팀(02-581-5711~4)이나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(02-2110-8548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※ 본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은 건축사자격시험과 별도 분리 시행하는 것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